

[별표 5의2] <신설 2004.4.20>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관련)

1. 용기보관실

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용기보관실에 설치하되 분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조명등

용기보관실내에는 방폭등외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설비의 방폭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전기스위치는 용기보관실의 외부에 설치할 것

5. 용기보관실의 온도상승방지 조치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용기의 취급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7. 가스전용운반자동차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의 (3)·(11)(나) 및 (12)(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7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